

#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6.

발의자 : 김민전 · 백종현 · 김선교  
김용태 · 김대식 · 조배숙  
최형두 · 최수진 · 김종양  
이종욱 · 나경원 · 서지영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,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,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,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.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

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##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통지할 수 있다”를 “통지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내용 및 실시”를 “내용 · 실시,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과 국회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”로 한다.

②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등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  
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 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-----  
--내용 · 실시, 제2항에 따른 결  
과 제출과 국회 보고 및 제3항  
에 따른 자료 제출-----  
-----.